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8. ~ 5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”를 “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(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,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9조의6제2항제1호 중 “직전 연도”를 “폐업 연도(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”로 한다.
별지 제10호의12 서식의 제목 “[] 1종 [] 2종 나무병원 등록신청서”를 “나무병원 등록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신청인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청인 첨부서류	1.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.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가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나.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다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(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(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,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
-------------	--

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
 갈음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(폐업 연
 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)의 조세에
 관한 신고서류(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
 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
 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

나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
 도의 재무제표

다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
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의 재무제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6(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<u>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.</u>	제19조의6(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(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,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-----.
1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<u>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(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</u>	1. ----- ----- ----- 폐업 연도(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	---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